

서 정 대 학 교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 목 서정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

우리 대학이 2017년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일자리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주요내용: 목적(제1조), 조직 및 역할(제2조), 운영위원회(제3조), 참여 및 활동(제4조), 재정 및 회계(제5조), 업무(제6조), 운영세칙(제7조), 준용(제8조), 부칙

※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

2. 시행일: 2017. 10. 11

붙임: 서정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운영규정 1부. 끝.

서정대학교총장

기안자 김세권 창업지원센터장 한정아 학생복지처장 현영렬 대학일자리본부장 한재석 총장 김홍용

협조자 기획처장 기은광

시행 대학일자리본부 제17-10-11-12 (2017.10.11)

접수 ()

우 114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-56

/ www.seojeong.ac.kr

전화 031-860-5059

전송 031-860-5060

/ happy9523@seojeong.ac.kr /

공개

서정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운영규정

제정 2017. 10. 11

소관부서: 대학일자리본부

제 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대학일자리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조직

제2조(조직 및 역할) ① 본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사업본부장으로 한다

- ② 본부장은 본부를 대표하며, 본부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
- ③ 본부 내 취업지원센터, 창업지원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원스톱일자리센터를 두고, 센터 간 학생복지처장이 지원 총괄한다
- ④ 본부 내 원스톱일자리센터(이하 일자리센터)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센터장, 팀장, 컨설턴트 등을 둔다.

제3조 (운영위원회) ① 교내 취·창업 등과 관련된 부서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을 위해 본부 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관련 센터장 및 각 처장, 단장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내 진로 및 취·창업지원 관련 주요사항 조정
 - 2. 교내 각 기관 취·창업 관련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
 - 3. 진로 및 취·창업 관련 학사제도 개편 등 추진
 -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 (참여 및 활동)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취·창업지원 관련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와 경기도, 양주시 등이 주관하는 지역고용협의회 및 운영협의회 등에 참여한다.

제 3장 예산의 집행

- 제5조(재정 및 회계)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② 본부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와 회계 등은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등 각 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. 다만, 사업비 관련 운영지침에 누락된 경우에는 교비 회계기준을 따른다

제 4장 주요추진사항

제6조(업무) 본 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
1. 진로지도 및 취·창업 상담,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2. 해외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
3. 채용 정보제공 및 채용박람회, 취·창업지원서비스 제공
4. 지역 고용센터 및 지자체, 유관기관 협조 및 연계
5. 대학 내 취업지원기능 연계 One-Stop서비스 제공
6. 청년고용 관련 주요사업 추진
7. 지역 유관기관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
8. 기업체 연계 및 취업처 발굴, 취업자 DB 구축
9.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운영지원
10.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
11. 취업전략 자문 및 의사결정을 위한 청년고용협의회 구축, 운영
12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5장 보칙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걸쳐 수행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등에 관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(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종료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